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17. ~ 2023. 12. 27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체 없이”를 “1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,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57조제2항제1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57조(유해요인 조사) ① (생략)	제657조(유해요인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지체 없이</u>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 <u>1개월 이내에</u> ----- ----- <u>. 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,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1.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가목·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<u>경우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(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)</u>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